

의안 번호	598
----------	-----

【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
조례안】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·제출자 : 2007. 11. 21(수) ·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07. 11. 26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07. 12. 07(금)

2. 개정이유

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감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 (안 제5조의2, 안 제6조)
- 나. 문화재 및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 정비 (안 제8조, 안 제9조)
- 다. 지방공사 및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 (안 제12조, 안 제14조)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세법」 제7조 및 제9조
- 나.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2481(2007.10.4)호 “지방세 감면 조례개정 표준안”

5. 검토의견

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[지방세제팀 2481(2007.10.4)호] 의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한 것으로, 이는 지방세법 제9조(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) 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로 가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